

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의 현 수탁법인 해산 및 민간위탁 사무 해지 결정에 따라 푸드마켓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며
- 이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, 제34조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2)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고, 안정적 시설운영
-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식품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과 식품 등의 나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기부식품 등의 모집·관리 및 제공,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개발, 그 밖에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위치 : 마포구 신촌로26길 10,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
- 2) 규모 : 매장 166.81㎡
- 3)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8.1. ~ 2028.7.31.(5년) 예정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3년 예산 기준)

- 1) 소요예산 : 134,576천원
- 2) 산출근거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134,576		
인건비	94,976	(53,654천원×1명)+(41,322천원×1명)	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
운영비	39,600	3,300천원×12개월 ※관리비, 차량유지비, 공과금, 사업비 등	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사항

○ 민간위탁 추진일정(안)

-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: 2023. 5월
-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: 2023. 6월 ~ 7월
- 협약체결: 2023. 7월
- 위탁운영: 2023. 8월 ~ 2028. 7월(5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사회복지사업법>

제2조(정의)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<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>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[개정 2008.11.5, 2012.8.3, 2019.6.12, 2020.1.3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[개정 2004.9.6, 2012.8.3, 2016.8.3]

<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>

제7조(국가 등의 지원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2.3] [[시행일 2017.2.4]]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개정 2016.2.3] [[시행일 2017.2.4]]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[개정 2016.2.3] [[시행일 2017.2.4]]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[개정 2021.5.6.]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]

나. 기타 참고사항 [별첨]

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1. 인적·물적 현황

주소	면적	직원현황
마포구 신촌로26길 10,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	매장 166.81㎡	2명

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(2022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비고
계	130,833	126,905	
인건비	89,633	85,934	구비 100%
운영비 및 간판교체비 등	41,200	40,971	시비 800천원, 구비 40,400천원

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
1) 현 수탁자명 :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

2)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3. 12. 31.

※ 현 수탁기관의 해산 및 민간위탁 사무 해지 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전 종료 예정

3) 운영내용(2022년)

회원수	모금실적	배분실적	연 이용인원
1,067명	837,439천원	516,113천원	8,047명

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
점검일자	지적사항	조치결과
2022.10.28.	- 기부식품 등 영수증 단가 장부가액 미적용 등 주의 2건 -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등 시정 4건	시정 완료 처리

5. 사건·사고 현황 : 해당사항 없음

6. 성과평가결과서

- 평가주체 : 보건복지부 (평가주기 : 3년 / 평가일 : 2022. 8월)
- 평가근거 :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사업장에 대한 평가),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
- 평가내용 :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운영성과 등 평가
- 평가결과 : A등급(90점 이상)

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: 재위탁(공개모집)

- 심의일시 : 2018. 12. 18.
- 심사결과 :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위탁선정
-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3. 12. 31.